

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

(제정 2018. 6. 1.)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(이하 “HK+”라 한다.) 연구단의 인문한국교수(이하 “HK교수”라 한다.)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** HK교수는 한국연구재단 「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」(이하 “운영지침”이라 한다.)에 따라 정년보장전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교 HK교수로 한다.
- 제4조(성실의 의무)** ① HK교수는 소속 연구소에 상근하며 외부기관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.
② HK교수는 「전주대학교 학칙」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장 임용

- 제5조(임용 원칙)** 연구단은 HK사업 연구계획서의 단계별, 연차별 연구인력 구성 방안에 부합하는 HK교수를 임용해야 한다.
- 제6조(임용계획 수립)** 연구단장은 HK교수의 임용계획을 교무처에 제출한다.
- 제7조(임용절차)** HK교수의 임용은 「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」을 준용하여 시행한다. 다만, 동일교 출신(학사학위와 박사학위 기준) HK교수는 5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동일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인문학이 아닌 다른 학문분야 전공 학위취득자는 동일교 출신으로 보지 않는다.

제3장 재임용, 승진, 정년심사

- 제8조(승진 및 재임용 요건)** HK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의 심사에 필요한 업적 충족량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	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	연구업적	교육·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업적	산학협력업적
승진	조교수에서 부교수	6년	1500점	500점	500점
	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	5년	1200점	425점	425점
재임용	조 교 수(1회차)	2년	300점	175점	175점
	조 교 수(2회차)	4년	500점	450점	450점
	부 교 수	6년	550점	600점	600점

※ 업적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「교원업적평가규정」을 준용함
※ 업적충족량을 초과하는 연구업적은 교육·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업적, 산학협력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

제4장 보칙

제9조(계약의 중도해지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HK교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
2. 잔여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임용사유가 소멸될 경우
4.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5. HK연구사업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로 정책상 계속 임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
6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

제10조(준용) HK교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교원인사규정」, 「교원업적평가규정」, 「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」 및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